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영업방해 금지〉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05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영업방해 금지(안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 | 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5.

다. 회 부 일 : 2024. 9. 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별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

항,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74조제1항제2호의2).

### Ⅲ. 검토의견

####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영업방해 금지(안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책무로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추가함(안 제3조 제2항).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신설).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생략)       |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이용자는 <u>건전한</u>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u>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u> ----- |

| 현행                                                                                                                                                                                                                                                                                                    | 개정안                                                                                                                                                                                                                                                                                                                                                                                                                         |
|-------------------------------------------------------------------------------------------------------------------------------------------------------------------------------------------------------------------------------------------------------------------------------------------------------|-----------------------------------------------------------------------------------------------------------------------------------------------------------------------------------------------------------------------------------------------------------------------------------------------------------------------------------------------------------------------------------------------------------------------------|
| <p>③ (생략)</p> <p>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3. ~ 9.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u>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u></p> <p>3.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4조(벌칙) ①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u>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u></p> |

| 현행                     | 개정안                                                           |
|------------------------|---------------------------------------------------------------|
| 3. ~ 7. (생략)<br>② (생략) | <u>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u><br>3. ~ 7.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2021년 6월 한 식당 점주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욕설, 비방 후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블랙컨슈밍<sup>1)</sup>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비방 후기는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업주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반박의 어려움, 사건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주가 직접적·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책무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유지’를 추가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1) 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이용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sup>2)</sup>, 이 법에서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함<sup>3)</sup>.
-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은 소비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 블랙컨슈밍은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는 이용자 전반의 책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책무로 볼 수 있고,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생활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sup>4)</sup>.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경제활동, 상품거래 등 다양한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는 이용자의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안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수용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자의 의무로 국한하기보다는 타 법률에 관련 조항을 적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올바른 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는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 둘째, 개정안의 처벌규정이 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와 중복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

---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sup>5)</sup>, 현행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업무방해죄)<sup>6)</sup>.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통한 영업 방해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미 무거운 벌칙으로 규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라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sup>7)</sup>,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낮아 보인다

---

5)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정안에 따른 행위는 현행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며, 사업자가 거짓 후기 여부를 확인·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230 |